

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

[시행 2025.02.28]
(전부개정) 2025.02.28 조례 제1506호

관리책임부서명 : 혁신사업홍보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053-661-2462

제1조(목적)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의 권리 및 책임으로 청년의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, 조정과 지원 등 청년의 자립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이념) 이 조례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,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
제3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.
2. “청년정책”이란 청년의 정치·경제·복지·사회·교육·예술·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, 고용촉진, 능력개발, 복지향상 등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.
-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「청년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청년과 관련된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경우 청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① 대구광역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는 청년에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한다.

제6조(청년정책에 관한 실시계획) ① 구청장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구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2.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
3.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
4. 이전의 실시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
5.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방안
6. 청년정책사업의 발굴
7. 청년의 정치·경제·복지·사회·교육·예술·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
8. 청년의 일자리 질 향상 및 주거·부채·복지 등 생활안정
9. 청년문화 활성화와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
10.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
11. 청년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민·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
12.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

③ 구청장은 실시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 구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실시계획에 따른 수립 및 추진실적을 제8조의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정책연구 등)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청년정책위원회)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정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
2. 실시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
3.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민·관 협력에 관한 사항
4.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5.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발굴된 의제 등의 사항
6.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, 당연직 위원은 경제, 일자리, 문화, 복지, 주택 등 청년정책 업무를 지원하는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.

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,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
2.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
3.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4.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⑧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.

⑨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⑩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⑪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⑫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9조(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
2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
3.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
4.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5.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제10조(청년정책네트워크) ① 구청장은 청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,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정책네트워크(이하 “청년정책네트워크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청년의 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사업 제안
2. 청년정책에 대한 의제발굴 · 제안 · 협의 · 토론 · 평가
3. 구에서 주최하는 각종 위원회 회의 참관
4. 국내외 청년단체 · 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
5. 활동보고서 발간

6.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받아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하고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받은 날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
2. 대구(경산 포함) 소재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재학 · 휴학 · 졸업한 청년
3. 구 소재 사업장이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다.

⑤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의 해촉과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.

⑥ 구청장은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청년정책 사업의 추진)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, 고용촉진, 능력개발, 복지향상 등 청년발전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
2.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
3.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
4.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
5.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을 위한 사업
6. 청년의 문화 · 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
7.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
8. 청년의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
9. 청년의 국제협력 지원을 위한 사업
10.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
11.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

제12조(청년시설의 설치 · 운영) 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·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청년지원 관련 단체, 법인 또는 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설치 ·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 · 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3조(청년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지원센터(이하 “청년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청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청년지원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
2.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·관 협력 활성화
3.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·지원
4.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
5.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
6.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③ 구청장은 청년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대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청년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4조(예산의 지원)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·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5조(사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 단, 위원회 관련 업무는 제외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6조(관련 기관·단체와의 협력)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(그 소속·산하기관을 포함한다), 지방자치단체,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, 필요할 경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17조(포상)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, 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2.22 조례 제1254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10.11. 조례 제1349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 12. 20. 조례 제1420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조례 제1506호 2025. 2. 28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.